

한강교량 방호

한강교량 중 국가 중요시설인 영동대교, 마포대교(이상 “가”급) 및 행주대교(이상 “다”급)의 방호를 위해 현장 방호초소에 근무중인 방호 근무자들(청원경찰)의 사무관리비 및 전기·통신 등 공공운영비 지원

예산(안) 총괄 (단위 : 천원)

2014예산 (A)	2015예산(안)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10,000	10,000	-	-

사업설명 (단위 : 천원)

사업목적

- 국가 중요시설 “가”급(영동대교, 마포대교), “다”급(행주대교)의 방호시설 24시간 상시 방호업무 유지를 위한 근무자 근무지원

사업근거

-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(국가중요시설의 정의)
 - 공공기관, 공항, 항만, 주요 산업시설 등이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
- 통합방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호(국가중요시설의 경비·보안 및 방호)
 - 국가중요시설의 경비·보안 및 방호책임은 시설의 관리자(소유자 포함)
- 통합방위지침(대통령훈령 제28호), 서울시 통합방위지원계획('96.02.05)
 - 시설주는 방호인력, 장애물 및 과학화 감시장비를 통합, 자체 방호계획 수립
 - 청원경찰 임용, 1일 3교대 근무 실시

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한강교량 3개소(영동대교, 마포대교, 행주대교)
- 규 모 :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방호초소 운영 및 근무자 순찰활동 지원
- 사업기간 : 2015. 03. ~ 2015. 12.
- 사업내용 : 사무관리, 유류비 등 초소운영, 방호원 피복 및 방호장비 구입, 통신·전화요금 지급
- '15년도 소요예산(안) : 10,000천원(사무관리비 : 7,800천원, 공공운영비 : 2,200천원)

추진경위

- 1979. 06. 02. : 한강교량 군·경 초소 설치
- 1999. 04. 03. : 교량방호업무 개선계획 수립("가"급 - 영동대교, 마포대교)
- 2002. 03. 15. : 행주대교(국가보안목표 "다"급) 인수

2015년도 예산(안)(단위 : 천원)

구분	2013결산	2014예산(A)	2015예산(안)(B)	증감(B-A)
계	5,470	10,000	10,000	-
사무관리비	3,898	7,800	7,800	-
공공운영비	1,572	2,200	2,200	-
사무관리비		7,800	7,800	-
한강교량 방호		7,800	7,800	-
공공운영비		2,200	2,200	-
한강교량 방호		2,200	2,200	-

2015년도 예산(안) 산출 근거

총사업비	10,000천원
■ 사무관리비	7,800천원
· 사무비품, 유류비 등 초소운영	
- 50천원 × 3개소 × 12개월 =	1,800천원
· 방호장구류 보수 및 구입	
- 200천원 × 3개소 =	600천원
· 방호원 피복비	
- 90천원 × 9명 × 2회 =	1,600천원
· 방호초소 보수 등	
- 1식	3,800천원
■ 공공운영비	2,200천원
· 방호초소 전화 및 통신요금	
- 60천원 × 3개소 × 12개월 =	2,200천원

사업추진 절차

- 집행절차
 - 예산편성 → 도로사업소 예산 재배정(남부, 성동, 강서) → 월간 및 수시 집행

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○ 추진방향

- 방호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적시에 사무관리비 및 통신 지원

○ 추진일정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계		10,000	
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	2015. 01.		
도로사업소별 예산 집행	2015. 03. ~ 12.	10,000	
집행 정산	2015. 12.		

실·본부·국	부서명	담당자			
도시안전본부	교량안전과	교량기획팀장	하현석 (☎ 2133-1942)	주무관	박소미 (☎ 2133-1945)

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계획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.

<http://opengov.seoul.go.kr/sanction>